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종로구 세입징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용상 문제점의 개선·보완을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서울시 조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「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(안 제2조)
- 나.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체납과 2년차 이상 체납과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이상 체납의 경우를 차등하여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,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함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,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- 1263(2006.3.28)
서울특별시 세무과 - 27507 (2006.10.10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친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1호 및 제3항 단서 중 “미수액”을 각각 “체납액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 중 “조세범처벌법”을 “「조세범처벌법」”으로, “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,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”를 “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”로 하고,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미수액”을 “체납액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3.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

100분의 5

제3조의2제1호 중 “미수금”을 “채납액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미수액”을 “채납액”으로, “종로구 ○○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”을 “과년도채납액징수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년도 채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(지급범위)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 1. 미수액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.이하 같다) 2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,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,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	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(지급범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. 체납액 2.(현행과 같음) 3.(현행과 같음) ② 「조세범처벌법」 -----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별 세입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
현행	개정안
<u>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.</u>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<u>미수액</u>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제3조(지급기준)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 1.과년도 <u>미수액</u>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.과년도 <u>미수액</u>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〈신설〉 3.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·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.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.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	<u>에 한한다.</u> ③ _____ _____ _____ — <u>체납액</u> — _____ 제3조(지급기준) ————— _____ 1. — <u>체납액</u> — _____ 2.과년도 <u>체납액</u>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.과년도 <u>체납액</u>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현행	개정안
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5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,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진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의2(지급한도)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1. 부과기준에 의한 <u>미수금</u>징수 1건당 30만원(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.) 2.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) ① <u>미수액</u>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<u>종로구○○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~④ (생략) 1.~3. (생략) ⑤~⑥ (생략) 제5조(대장비치)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<u>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</u>(포상금지급대상)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<u>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</u>(포상금지급대상)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.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제3조의2(지급한도)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체납액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) ① <u>체납액</u>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<u>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</u>----- ----- ②~④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⑤~⑥ (현행과 같음) 제5조(대장비치)----- ----- <u>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제7조(지급)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 ②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하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	제7조(지급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.